## 산업체근무학생 학사관리 규정(3-5-8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산업체 근무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를 변경·보완하여 수업일수 및 성적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기준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.
  - 1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
  - 2.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
  - 3. 공보처에 등록된 신문사, 방송사
  - 4. 의료기관
  - 5.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
  - 6.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(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)
- 제3조(수업일수) ① 산업체 근무학생은 본교 학칙시행세칙 제6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·숙직, 잔업처리로 인한 야근, 비상대기 등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장이 발행하는 증빙서류(별지서식)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.
  - ② 산업체 근무학생의 수업은 일반학생에 준하여 시행하되 교과진도 상황에 따라 과제물 등 재택학습을 부과할 수 있다.
  - ③ 위 1, 2항을 합하여 수업일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(개정 2008. 10. 9)
- 제4조(학점인정) ① 산업체 근무학생은 학점이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학기 2학점씩 총 16학점 까지 산업체 근무성적에 의거 졸업학점(일반선택 학점)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 - ② 산업체 근무성적의 학점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5조(추가시험) 산업체 근무학생이 당해 기관장이 인정하는 근무 등의 사유로 중간 및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 또는 과제물로 대체 평가할 수 있다. 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8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10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1월 28일로부터 폐지한다.